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3일

3. 제정이유

-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.
-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 건축물들을 법률에 의하여 시장·군수가 직권 철거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 관계로 직권철거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시·군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주변환경 피해 건축물 철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, 직권철거를 위한 보상 재정을 도에서 시·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3조에는 주변환경 피해 건축물 철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
 - 둘째, 안 제4조에서는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
 - 셋째,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이의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1부. 끝.